



누가 선량배우자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? (공동납세의무에 대한 구제안)

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때 다음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(또는 이전 배우자) 앞으로 부과된 세금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.

- 소득, 소득공제, 세액공제 또는 자산기준에 대한 누락이나 실수로 인해 세금이 적게 보고된 경우
- 세금보고에 서명할 때 세금이 적게 보고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
- 적게 보고된 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모든 정황 및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세금연도 1999년 이후에 발행된 세납고지서의 경우:

선의의 배우자(Innocent Spouse), 책임분담(Separation of Liability), 형평성의 혜택(Equitable Relief)이라는 3가지 구제방안이 있습니다. 각 구제안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세무양식 IT-285, *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 (and Separation of Liability and Equitable Relief)*[선량배우자 구제 신청(책임분담과 형평성 혜택)] 및 해당 지침사항을 참조하십시오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.

세금연도 1999년 이전에 발행된 세납고지서의 경우:

위 세금연도에 대해 선량배우자 구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해당 세무양식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.

**NYS TAX DEPARTMENT
PO BOX 5120
ALBANY NY 12205-0120**

미국 우편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실 경우 **Publication 55, 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**를 꼭 참조하십시오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.

더 자세한 내용은

- 뉴욕주 간행물 89, *Innocent Spouse Relief (And Separation of Liability and Equitable Relief)*[선량배우자 구제(및 책임분담과 형평성 혜택)]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, 또는
- IRS - Tax Information for Innocent Spouses(선의의 배우자에 대한 세금 정보)를 참조하십시오.